
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(안)

2014. 12.



농림축산식품부
축산정책국

❖ 목 차 ❖

I.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개요	3
II. 국내외 동물복지 여건	6
III. '08년 동물보호·복지 종합대책 평가	15
1. 주요 성과	15
2. 반성	18
IV. 동물보호·복지 기본방향	21
1.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	21
2. 비전, 목표 및 추진과제	22
V. 세부 추진방안	23
1.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	23
2. 한국형 농장동물 복지체계 구축	34
3.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	42
4. 추진체계 및 R&D	47
VI. 실천계획	57
1. 법령·통계 정비계획	57
2. 투융자 계획	59
3. 계획 추진 및 평가 체계	60

I.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개요

1 계획의 수립배경 및 의의

◆ 그간의 동물보호·복지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산업여건 및 국민 의식수준 변화에 따른 중장기 비전과 정책방향 제시

□ 매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·추진 및 평가 필요

- 동물보호·복지정책에 대한 수요 확대에 따라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고 동물복지5개년계획 수립 의무화('12~, 동물보호법 4조)

※ 동물보호법 제4조제1항 : 국가는 동물의 적절한 보호·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

□ 국내 동물보호·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정책방향 재정립 필요

- 반려동물 증가 및 유기동물 지속 발생, 반려동물 관련 영업 확대, 농장동물 사육환경 개선 요구 증가, 동물실험 반대 확산 등 추세

※ '1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결과, 동물고통 최소화를 위한 도덕적 의무에 대해 98.1%가 동의, 동물보호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91.8%가 긍정적

□ EU·OIE(세계동물보건기구)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의 동물복지 기준 강조 추세

- OIE에서 '05년부터 총 12개 분야에 대한 동물복지 기준을 마련하여 회원국의 준수를 권고

※ 한-EU FTA 협정문에도 “동물복지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”는 내용 포함

□ 계획의 범위

- 공간/시간적 범위 : 전국/2015 ~ 2019년
- 적용 범위 : 농림축산식품부(소속 기관 포함), 농진청(연구개발 및 지도), 지자체(시·도/시·군), 관련협회 및 일반국민 등

□ 계획의 주요내용(동물보호법 제4조)

- ◇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
- ◇ 유실·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
- ◇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
- ◇ 동물학대 방지, 동물복지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·홍보
- ◇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 등

□ 계획의 성격

- 동물보호법에 의한 법정계획('12~, 동물보호법 4조)
-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미래상을 제시하면서 동물보호·복지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
 - ※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시·도 단위 기본계획의 상위계획
- 매년 예산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실행계획
 - ※ 매년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되, 투융자 평가 및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조정

□ 계획의 수립체계

- 관련기관·협회,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동물복지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확정 및 발표

- 반려/농장/실험동물 분야별 초안 마련('13.11월~12월)
 - 검역본부·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동물보호·복지 종합대책('08~'13) 평가 및 분야별 세부추진방안 마련
- 동물복지위원회 위촉 및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의견수렴 회의 개최 ('13.12.13)
 -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분야별 초안에 대한 자문
 - ※ 동물복지위원회 : 위원장(호선)을 포함하여 위촉직 10인으로 구성
- 관계기관 및 단체 등 전문가협의회 개최('14.1.3)
 - 정책방향 및 세부추진과제의 적절성, 보완사항 등 의견수렴
 - ※ 검역본부, 축산과학원, 지자체, 수의사회, 축산단체(한우, 낙농, 한돈, 양계 등), 동물보호단체, 동물실험시행기관, 관련 교수 등
- 세부추진과제 보완사항 및 실행계획 등 업무담당자 협의 (3.14)
 - ※ 검역본부, 지자체 동물보호 업무담당자
- 분야별 세부추진과제 전문가협의회 개최(반려 5.2, 농장·실험 5.15)
 - ※ 검역본부, 축산과학원, 지자체, 관련 교수, 동물복지위원회, 동물보호단체, 축산단체, 화장품협회, 반려동물생산자협회 등
- 관계기관 및 지자체 실무자 워크숍(5.22~5.23)
 - 세부추진과제 수정·보완, 이행방안 및 추진일정 조정 등
- 관계기관 및 단체 등 전문가협의회 개최(10.20, 11.12, 12.19)
- 온·오프라인 정책 포럼 실시(10.31~11.21, 12.12)
- 계획(안)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(12.9~12.15)

□ 동물복지위원회 개최(12.17)

○ 관련기관협화전문가 등 협의를 통해 마련한 계획(안)에 대한 최종 지문

II. 국내외 동물복지 여건

1 대외적 여건

□ (국제기구) OIE(세계동물보건기구)에서 '05년부터 총 12개 분야*에 대한 동물복지 기준을 마련, 회원국의 기준 준수 유도

* 운송·도축·살처분 등 육상동물 9분야, 수생동물 3분야(참고)

○ OIE 아시아지역사무소 및 호주정부를 주축으로 '아시아-오세아니아-극동지역 동물복지전략'을 수립하고 실행계획 마련 추진

□ (EU) 모든 축산농가에 산란계 일반케이지 사육 금지('12년) 및 돼지 스톨 사육 금지('13년) 등 동물복지 정책 적극 추진

○ '13년부터 자국내 화장품 원료 및 완제품에 대한 동물실험 금지 및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수입 금지

□ (미국) 정부지원 없이 운영하는 사설 동물보호소 활성화, 농장 동물에 대한 업계 자체 동물복지 기준 제정 등 민간 주도

○ 실험동물은 농무성 및 보건복지부에서 실험기관의 동물실험 윤리위원회(실험동물운영위원회, IACUC) 관리

□ (일본) 동물유기 방지를 위한 동물인수제 시행, 농장동물복지

지침 제정* 및 학회 등에서 실험동물 가이드라인 자체 마련

* '09년 돼지·산란계, '10년 젓소·육계, '11년 육우

참고 IIE 동물복지 가이드라인('05~, 총 12개 분야)

(1) 육상동물 분야 (9개 분야)

- 동물의 육상운송(The transport of animals by land)
- 동물의 해양운송(The transport of animals by sea)
- 동물의 항공운송(The transport of animals by air)
- 인간소비를 위한 동물 도축(The slaughter of animals for human consumption)
- 질병방역목적의 동물 살처분(The killing of animals for disease control purposes)
- 유기견 개체수 조절(The control of stray dog populations)
- 연구 및 교육분야의 동물 사용(The use of animals in research and education)
- 동물복지와 육우생산시스템(Animal welfare and beef cattle production systems)
- 동물복지와 육계생산시스템(Animal welfare and broiler chicken production systems)

(2) 수생동물 분야 (3개 분야)

- 양식어류의 운송 시 복지(The welfare of farmed fish during transport)
- 인간소비를 위한 양식어류의 기절 및 도축시 복지관점(The welfare aspects of stunning and killing of farmed fish for human consumption)
- 질병방역 목적의 양식어류 살처분(Killing of farmed fish for

disease control purpose)

2 대내적 여건

가 정책 추진 체계

- (법령)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에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의 적정 보호·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
 - 보호대상 동물로는 포유류, 조류뿐만 아니라 식용 목적이 아닌 파충류·양서류·어류 등도 포함
 - 주로 사람이 사육·관리·보호하는 반려/농장/실험동물에 대해 규정
 - ※ 실험동물은 식약처와 공동관리, 야생동물은 환경부에서 관리
- (조직) 농식품부(총괄), 검역본부(집행 및 관리), 농진청(연구·개발), 지자체(일선 업무) 등에서 체계적인 업무 수행
 - 농식품부에서 총괄(법령운용 및 정책기획)하고, 검역본부에서 일선 업무 집행 및 관리*
 - *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,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지도·감독, 동물등록정보 관리 등
 -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의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서 1명이 동물보호·복지 업무를 담당하거나 타업무와 중복 담당
 - ※ 다만, 서울시에 동물보호과,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내 반려동물센터팀 존재
- (관련 단체) 동물보호단체 27개 및 분야별 이해관계단체 6개 등
 - 농식품부 인가법인으로 동물보호단체 4, 애견단체 4, 반려동물

생산자단체 1, 실험동물학회 1 등 10개 단체 활동 중

※ 그 외 지자체 법인 8개, 비영리민간단체 15개의 동물보호단체 존재

참고

동물보호·복지정책 추진 체계

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령 운용 및 정책 총괄

동물복지위원회 자문

	반려 동물	농장 동물	실험 동물
농림축산 검역본부	동물보호관리시스템 운영 동물등록정보 통합 관리 유실/유기동물 신고 및 공고 동물보호법령정책 정보 제공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제 운영	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및 점검 동물복지운송차량/도축장 지정	동물실험윤리위 지도/감독 동물실험지침 운영
축산 과학원		동물복지인증기준 마련 실증실험 시범농장 운영	
지방자치 단체	동물등록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반려동물 관련 영업등록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	동물복지축산농장 사후점검 동물운송규정 위반 단속	
동물실험 윤리위			동물실험 심의 동물실험시행기관 지도/감독
동물보호 단체	동물 유기/학대 감시 동물보호 교육 및 홍보 정책건의 자문 유기/피학대 동물 보호	동물 학대 감시 교육 및 홍보 정책건의 자문	동물 학대 감시 교육 및 홍보 정책건의 자문 동물실험윤리위원 추천

- 야생동물은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환경부에서 관리
- 실험동물은 「동물보호법」 및 「실험동물법」에 따라 농식품부, 식약처 공동 관리

나 분야별 현황

① 반려동물

□ 1인가구 증가 및 저출산·고령화 등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

○ 최근 애완동물에 대해 반려동물*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관련 용품 및 서비스도 지속 성장·고급화 추세

*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여 애완동물은 사람의 장난감이 아니라는 뜻에서 국제적으로 반려동물화 추세

※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 : 사료 2,500, 반려동물 및 관련 용품 3,099, 수의 진료 3,126, 장묘·보호서비스 191 등 약 9,000억원 시장('12, 통계청)

< '90~'12년간 가구당 애완동물 관련 지출 추이(통계청) >

단위 : 원/연간

구분	'90년	'00년	'10년	'12년	연평균 성장률(%)	
					'90~'00	'00~'12
반려동물 관련물품 구입액	3,156	5,628	20,628	27,900	5.96	14.30

○ 개 약 161만마리*, 고양이 약 40만마리**로 추정되며 점차 다양화

* 지자체별 등록대상동물 추정치('14.10월)

** 개 대비 고양이 사육비율(25%) 적용('1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, 검역본부)

□ 반려동물은 친구·친지, 동물판매업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수*

○ 동물판매업소**는 주로 경매장을 통해 동물을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

* 반려동물 입수경로 : 친구·친지(51.7%), 동물판매업소(17.4), 동물병원(9.1), 인터넷 개인간 거래(7.2), 기르던 동물의 새끼(3.8), 동물보호센터 입양(1.6) 등('13년 반려동물 관련 소비실태 및 개선방안, 한국소비자원)

** 생산업 700여개, 경매장 20여개, 소매업 2,500여개 영업 중

② 농장동물

□ 축산업 규모는 지속 증가*하여 '13년 기준 생산액은 16조원 (부가가치 4.9)으로 총 농림업 생산액의 35%(부가가치 19%) 차지

* 생산액·비중 : ('90) 4조원·22% → ('05) 11.8·32 → ('13) 16·35

○ 그간 축산물의 위생·안전성, 환경부담 완화, 질병 방역 등 현안과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동물복지 일부 수용

※ 축산업 허가제·HACCP 도입으로 사육밀도 등 사육환경 개선, 유기축산물 인증제('01년 도입) 기준에 동물의 습성 유지 포함 등

○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란계('12), 돼지('13)에 대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별도 도입

※ 인증현황('14.11월) : 산란계농장 58개, 돼지농장 1개

□ 안전하고 몸에 좋은 식품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, 동물복지 등을 고려하는 윤리적 소비* 확산 추세

* 윤리적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바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 선택(유기농·동물복지 식품, 에너지 절감식품, 공정무역, 로컬푸드 등)

○ 일부 동물복지 축산물이 일반 축산물보다 고가로 판매되고 있고, 소비자의 요구도 증가 추세

- 동물복지 계란은 대형마트·백화점 등에서 판매되며, 개당 420원 내외로 일반 계란(개당 200원 내외)에 비해 2배 정도 수준

※ 동물복지 계란이 일반 계란보다 3~4배 비싸더라도 구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36%('1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, 검역본부)

③ 실험동물

□ 의약품·화장품 등 새로운 제품이나 치료법의 효능과 안전성 확인, 교육·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실험 지속 증가*

* 실험동물 사용수(천마리) : ('09) 1,113 - ('10) 1,439 - ('11) 1,660 - ('12) 1,834 - ('13) 1,967

* 동물실험 건수(건) : ('09) 10,118 - ('10) 13,185 - ('11) 14,514 - ('12) 15,465 - ('13) 18,891

○ '13년 302개 기관*에서 197만여마리의 동물이 18,891건의 실험에 사용(건당 실험동물 마리수는 평균 6,512마리)

- 설치류 1,798천마리(91.4%), 조류 45천마리(2.3%), 토끼 39천마리(2.0%) 순으로 사용되었으며, 원숭이는 1,374마리 사용

* 실험기관(개소) : 국·공립기관 52, 대학 105, 의료기관 27, 일반기업체 118

○ 관련 산업의 규모는 약 1.2조원으로 추정되며, 분야별로 시설 건축, 실험동물 판매, 사육 기자재 판매, 사료 및 깔짚 순('11)

□ 동물실험의 정당성·유용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동물실험 대체 방법 개발·보급, 화장품 동물실험 반대활동 등 확산

○ 동물보호단체 및 일부 화장품업체에서 화장품 동물실험 반대를 위한 관한 온·오프라인 캠페인 및 광고 진행

※ 일부 국내 화장품업체는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은 화장품을 생산·마케팅에 활용

○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관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*(6건) 제정('07년~, 식약처)

* 살아있는 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세포, 인공피부, 도축된 동물로 대체 등

□ 반려동물

구 분	우리나라	미국	일본	대만
법	동물보호법	연방 애완동물 보호법	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	동물보호법
동물등록제	3개월령 개/ 내·외장형 칩, 인식표/ 변경신고	개/ 내·외장형 칩/ 매년 갱신 *샌프란시스코	90일령 개/ 내·외장형 칩/ 변경신고	4개월령 개/ 내장형 칩/ 변경신고
유기동물 구조·보호	지자체 직영 또는 위탁/ 7일간 공고	주정부 및 민간단체/ 3일간 공고	동물인수제/ 7일간 공고	티이페이지 직영 동물보호시설/ 입양률 50~60%
관련 영업	개, 고양이, 토끼, 페럿, 기니피그, 햄스터의 생산·판매·수입· 장묘업/ 책임자 교육	동물판매업 (반려 또는 실험용으로 판매하거나 사냥, 보안, 번식을 위한 도매) 면허	포유류, 조류, 파충류의 판매, 보관, 임대, 훈련, 전시업 등록/ 책임자 교육	동물생산, 판매, 숙박, 임대, 보관, 전시, 장묘업 관리
길고양이 TNR사업	지자체 주도	민간단체·캣맘 주도	민간단체·캣맘 협조, 지자체에서 수술비 50% 지원	자원봉사자 선정, 지자체에서 수술비 지원

□ 농장동물

구 분	우리나라	미국	일본	유럽연합
사육단계	동물보호법(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), 축산법(적정 사육밀도)	민간 자율 가이드라인 적용	동물복지지침 제정('09 돼지·산란계, '10 젓소·육계, '11 육우)	산란계 일반케이 지 사육금지('12년) 및 돼지 스톨 사육금지('13년), 민간단체 동물복지 축산물 인증
운송단계	동물보호법(동물운송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('14.2월 시행)), 동물운송세부규정(고시), 동물복지 운송차량 지정제	28시간법(연방, 사전 승인 시 적용 제외 인정)	-	회원국 공통 최소 기준 설정 Regulation No 1/2005
도축단계	동물보호법(농장동물 도축시 고통 최소화) 동물도축세부규정(고시),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제 시행	인도적 도축법(닭 제외), 생산자 단체 자체 기준 설정	동물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(농장동물 도축시 고통 최소화)	회원국 공통 최소 기준 설정 Regulation No 1099/2009

□ 실험동물

구분	우리나라	미국	일본	유럽연합
법	동물보호법,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	동물복지법, 확대보건연구법	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	과학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의 보호(Directive 2010/63/EU)
제도	동물실험윤리위원회, 실험동물운영위원회	기관동물관리 및 사용 위원회(IACUC)	위원회	동물 실험 위원회, 동물실험윤리위원회
주관 부처	농식품부, 식약처	농무부, 보건복지부	후생노동성, 문부과학성, 농림수산성	내무부, 수의당국 등
면허 여부	X	X	X	O (영국, 독일, 스위스, 프랑스 등)

Ⅲ. '08년 동물보호·복지 종합대책 평가

1 주요 성과

가 반려동물

- 유기동물 구조·보호업무를 체계화하고,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인도적 방안 도입
 - 지자체별로 운영하던 유기동물관리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(검역본부)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효과성 및 투명성 제고('12)
 - ※ 유기동물 처리비율(%) : ('08)인도4.9/입양25/안락사30.9 → ('13)10.3/28.1/24.6
 - 길고양이의 경우 중성화한 후 방사(TNR)*하여 인도적으로 개체수를 조절하도록 정책 전환
 - * 길고양이를 포획(Trap)하여 중성화(Neuter)하고 제자리에 방사(Return)하는 것으로, 중성화되면 울음소리, 수컷간 투쟁이 없어져 민원해소 등 기능
- 동물의 유기·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제 도입 및 동물소유자에 대해 목줄·인식표 등 관리의무 부과
 - 지자체별 선택·도입('08~)하던 동물등록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('13), 목줄입마개 등 안전조치 및 배설물 수거 등 적정 관리의무 부과
- 반려동물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려동물 영업 등록(신고)제 도입('08)
 - 동물생산·수입·판매·장묘업에 대한 시설·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마련하고, 영업자 동물보호교육 이수 의무 부과

나 농장동물

□ 동물 사육환경 개선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동물 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('12)

- 적정 사육밀도, 단미·발치 금지, 햇대 설치, 깔짚 제공, 케이지·스톨 사육제한 등의 기준을 준수하는 농장 인증*

* 인증현황('14.11월) : 산란계농장 58개, 돼지농장 1개

※ ('12)산란계→('13)돼지→('14)육계→('15)한육우젖소염소→('16)오라사슴메추리 등

□ 동물운송규정 의무화('14) 및 동물운송세부규정('08) 마련·시행

-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전기 물이도구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(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)
- 가림막·칸막이 설치, 적절한 사료와 물 공급, 적정 운송소요 면적, 부상방지 등을 위한 상하차시설 설치 등 세부 권장사항 규정

□ 동물복지 운송차량 및 도축장 지정제 도입·운영('13)

- 동물복지 지정 운송차량 및 도축장을 통해 운송·도축한 경우에만 축산물에 동물복지 인증표시 가능

※ 지정현황('14.11월) : 동물복지 도축장 2개소(부경/김해공판장) 지정

□ 인도적 도축의 원칙('13) 및 동물도축세부규정('13) 마련·시행

- 도축살처분시 고통 최소화 및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살·매몰
- 하차 시 동물의 추락·미끄러짐 방지, 계류사의 급수기·조명·환기·계류시간, 보정·기절·방혈 방법 등 세부규정

다 실험동물

□ 동물실험의 3R원칙* 규정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 도입('08)

○ 동물실험기관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및 실험계획심의의를 받아야 하며, 윤리위원회는 실험 원칙 준수 등 지도·감독

* 동물실험 대체(replacement), 실험동물수 감소(reduction), 고통최소화(refinement)

※ 윤리위원회 설치기관 : ('09) 259개 - ('10) 306 - ('11) 325 - ('12) 338 - ('13) 342

○ 한국 3R정보센터(3r.animal.go.kr),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시스템(aec.qia.go.kr) 등을 통해 관련 정보 및 교육자료 제공*

* 윤리위원회 심의 방법, 실험동물 사육·시설관리 기준, 관련 법령 등

라 정책기반

□ 동물보호법상 동물범위 확대*('14) 및 동물학대행위 처벌 강화**('12)

* (기존) 포유류, 조류 → (개정) 포유류, 조류, 식용 목적이 아닌 파충류양서류어류

** (기존) 500만원이하 벌금 → (개정)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

□ 동물보호·복지정책에 관한 정보 통합 관리·공개 및 홍보를 위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* 및 동물보호 콜센터(1577-0954) 운영

* 동물보호법령 관련 행정사항의 효율적인 처리기반 구축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전산시스템('08, 검역본부)

□ 민관 합동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감시·계도활동 강화 등을 위해 동물보호감시원(공무원)·명예감시원(일반인) 제도* 운용

* 동물보호감시원/명예감시원 실적('13) : 지정239명, 활동4,543건, 처분1,917건 / 위촉153명, 활동315건

□ (반려동물) 반려동물 및 관련 산업은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, 동물소유자 책임의식 및 관련 산업 관리체계 미흡

○ 목줄·입마개 등의 안전조치, 배설물 수거 등 동물소유자 관리의무 미준수* 및 동물유기**·학대*** 지속 발생

* 책임의식 부재 사례 : 목줄 없는 개로 인한 공포감 및 배설물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 급증('14.8 광주 00신문, '14.4 청주 00일보, '14.4 00방송사 등)

** 유기동물 발생현황 : ('05)65 → ('07)77 → ('09)83 → ('11)96 → ('13)97천두

*** 동물학대 사례 : 8마리 이상의 개들에게 눈에 라이터로 화상을 입히고, 발톱을 뽑고, 자상을 입히거나 커터칼 조각을 삼키게 하는 등 연쇄학대('10.1월), 에쿠스 승용차가 개의 목을 트렁크에 매단 채 질주하여 개가 사망('12.4월) 등

○ 유기동물보호센터 대부분이 위탁운영*되고 있으며, 사설보호소** 또는 애니멀호더(animal hoarder)*** 등에 의한 학대 행위 발생

* 동물보호센터 운영 현황('13) : 총 361개소 중 직영 25(7%), 위탁 336(93%)

** 지자체 직영 또는 위탁운영 동물보호센터가 아닌 민간보호시설(43개소 추정)

*** 동물 보호가 아닌 동물 수를 늘리는 데에만 집착하는 사람으로, 동물학대의 일종

< 사설보호소 및 애니멀호더 사례 >

- 사례1(사설보호소) : “동물단체들도 발길 돌렸어요”(‘13.7.24, 00신문)
- 850여마리 개·고양이와 쥐·진드기·파리떼 우글...서로 물어 죽이고...



- 사례2(에니멀호더) : 화장실까지 개로 꽂...서로 싸우다 죽기도('14.7.20, oo언론)
 - 좁은 공간에 과밀사육으로 전염병 발생, 스트레스로 인한 이상행동, 무리 안에서 잦은 출산으로 개체수 급증, 악취·소음 심각한 상태로 방치 등



- 동물 생산·유통 및 관련 서비스업 등에 대한 기반 미흡
 - 반려동물 생산업 신고율이 낮고, 동물 질병관리도 취약*
 - * 반려동물 소비자피해 중 84.5%가 폐사질병으로 인한 것('13.1~'14.3, 한국소비자원)
 - 미용·보관업에 대한 관리가 부재*하고, 반려동물 전용 의료보험 및 동물장묘업 등 활성화 부족
 - * 동물병원·미용서비스 이용자의 25.1%가 소비자불만·피해 경험, 그 중 미용서비스로 인해 다치거나 후유증 발생이 24.5%로 가장 많음
- (농장동물) 경제성·수익성 중심의 사양관리로 환경·동물복지 측면에서 취약하며,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참여 저조
 - 최소한의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 및 사양관리 가이드라인이 없고 축산농가 교육 시 관련 내용 부실
 -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아도 소비자 인지도가 미흡하고 전문 유통채널 부재로 적절한 판로와 적정 가격 보장 등 곤란

□ (실험동물)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미설치 및 형식적 운영 등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,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을 위한 지침 미비

○ 윤리위원회 미설치에 대한 별도 제재가 없어 동물실험기관 파악 및 실험동물 사육·관리 과정에 대한 관리 어려움

- 윤리위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, 윤리위원회의 실험계획에 대한 '승인'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

○ 실험동물의 번식·사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고, 동물실험 관련자에 대한 동물복지·실험윤리 전문교육 부족

- 특히, 초·중·고* 학생들의 해부실습 등 불필요한 동물실험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며, 동물실험 3R원칙 적용 등 가이드라인 부재

* 동물보호법상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니므로 윤리위원회 심의, 지도·감독 등 미적용

□ (정책기반) 관련 기초자료가 미비하고 담당 인력·조직 부족으로 현황·문제점 파악, 정책 수립 및 효과 분석 등 어려움

○ 동물보호·복지 관련 각종 기초 통계 수집체계 미구축 등

※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미반영, 지자체 조사결과는 신뢰도 등에 한계

○ 농식품부 등의 총괄·관리 기능이 미약*하여 효과적 정책대응, 지자체 지도 및 관계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 미흡

*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1계 2명, 검역본부(소속기관) 동물보호과 9명

※ 유관부처 비교 : (식약처) 실험동물자원과, (환경부) 생명다양성과

○ 대부분 지자체에서 담당부서 부재로 현장 집행업무 곤란

※ 동물보호과가 있는 곳은 서울시가 유일하며(12명), 시·도 및 시·군·구마다 1명이 동물보호·복지 업무를 담당하거나 타업무와 중복 담당

IV. 동물보호·복지 기본방향

1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

-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 이용의 윤리성을 제고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 전환 ⇒ 동물을 보는 관점을 물건에서 생명으로 전환
- (의식 확산)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 동물보호법령에 맞춰 동물 보호·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국민의식 확산 도모
- (제도 내실화) 반려·농장·실험동물의 보호·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내실화·고도화 추진
- (보편적 적용) 모든 축산농가에 적용될 최소한의 동물복지 기준 마련, 초·중·고교 정규 교육과정에 동물보호교육 포함 등

기 준	전 환
동물보호법령 강화 - 현실적 여건 및 국민의식 제고 필요 -	동물보호·복지 의식 확산 - 동물소유자·영업자 등 교육·홍보 강화 -
동물등록제, 인증제 등 단계적 도입 - 지원·관리체계 미흡 -	관련 제도의 내실화·고도화 - 관련 시설 지원 및 관리체계 보완 -
동물보호·복지의 선택적 적용 - 동물복지 인증제 및 초등학교 자율 동물보호 재량교육 -	보편적 확대 적용 - 농장동물 최소 복지기준 마련 및 동물보호 교육 정규과정 포함 -

- 이를 통해 국내외 높아지는 윤리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, 반려동물 관련 산업 및 축산업 등의 지속가능한 성장 유도

비전	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-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, 동물 이용의 윤리성 제고 -
-----------	--

목표	◆ 유기동물 발생수 : ('13) 97천두 → ('16) 85 → ('19) 70 ◆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비중 : ('13) 1% → ('16) 4 → ('19) 8 ◆ 동물복지실험기관 지정 : ('13) 0개소 → ('19) 10
-----------	--

추진 과제 및 주요 내용	1.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	① 동물소유자 책임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동물등록제 정착 • 동물유기에 대한 단속·처벌 강화 • 맹견관리, 소변처리 등 의무 확대
		② 유기유실동물 관리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동물인수제 도입 •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유도 •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마련 • 유기·유실동물 임의 구조·보호 금지
		③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관리·육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생산부터 판매까지 개체별 연계 관리 • 신규 서비스업 등록(신고)제 신설 • 반려동물 의료보험 활성화 기반 구축
		④ 인도적인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성화사업 표준지침 마련 • 민관 협조를 통한 감시·홍보 강화
	2. 한국형 농장동물 복지체계 구축	⑤ 축종별 최소 복지 기준 마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육·운송·도축 단계별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• 의무규정 단계적 확대 및 교육·지원
		⑥ 동물복지 인증제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련 인증제 개편 및 축종 확대 • 직불제 등 인센티브 제공 • 사후관리 강화 및 유통체계 구축
	3.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	⑦ 국가공통 동물실험 지침 마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실험동물의 보호·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• 동물복지실험기관 지정제 도입
		⑧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내실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윤리위원회 권한 및 전문성 강화 • 윤리위원회 지도·감독 확대
		⑨ 불필요한 동물실험 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화장품 등 동물실험 단계적 제한 • 초중고교 동물실험 원칙적 금지
	4. 추진체계 및 R&D	⑩ 추진기반 정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인력·조직 및 자원 확대 • 유관기관 및 민간과의 협조 강화 • 정책대상자 편의 제고
		⑪ 정책기반 공고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·홍보 • 기초통계 보완
		⑫ 연구개발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계기관 합동 R&D 기획단 구성·운영 • 길고양이 중성화 백신 개발 등 연구

추진 기반	◆ 관련 법(동물보호법) 및 기초 통계 정비 ◆ 주체별 역할 정립 및 이행 담보방안(교육·홍보, 재정지원, 지도·점검 등) 강구
--------------	--

V. 세부 추진방안

1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

가 동물소유자 책임 강화

◇ 반려동물 소유자 책임의식 제고 및 관리의무 강화

- 동물등록제 보완·강화를 통해 등록률 향상 및 제도 정착
 - 동물등록률 : ('13) 54.8% → ('16) 75 → ('19) 85
- 유기동물 발생마리수 : ('13) 97천마리 → ('16) 85 → ('19) 70
- 동물소유자 책임 강화를 통해 주민간 갈등 예방 및 피해방지

① 동물등록제 정착

□ 동물등록방법을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점차적으로 일원화하여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

- 훼손·분실가능성이 낮아 동물의 유기·유실방지 효과가 높은 내장형으로 등록방법 단계적 일원화*

* (현행)내장형, 외장형, 인식표 → ('16)내장형(개체특성을 고려하여 외장형 제한적 허용)

- 부작용에 대한 왜곡된 정보로 내장형 선택비율이 낮은바, 적극적 홍보를 통해 내장형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감 해소

※ 국내 시범 실시 180,201마리에서 14건(0.008%)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나, 대부분 단순부종

- 동물등록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규 구입 동물의 등록 관리 및 동물병원에 대해 등록여부 확인 의무화 추진('16)
- 동물판매업자에 대해 등록대상동물 구입자 정보 기록·관리 강화 등(동물보호법령 개정)
 - 3개월 미만 동물*의 경우 일정기간 내에 정식등록 유도(시·군·구)
 - * 동물보호법상 판매·거래가능 월령은 2개월/등록대상은 3개월
- 동물병원 진료시 등록여부 확인 및 진료기록부에 동물등록 번호 기재 의무화(동물보호법 또는 수의사법 개정)
 - 미등록 동물의 경우 1개월 내 등록하도록 하고, 미등록시 과태료 부과됨을 안내하여 등록 적극 유도

② 동물유기에 대한 단속·처벌 강화

- 동물유기도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경각심을 고취하고 유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*('16)
 - * 예시 : (현행)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→ (개선) 300만원 이하의 벌금
- 유실·유기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동물을 잃어버렸다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유기한 것으로 간주·처벌('16)
 - ※ 현행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변경신고 하도록 규정
- 유실·유기여부를 동물반환 이전에 판단하기 위해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 대한 변경신고 기간 단축(현행, 30일 → 개선, 7일)
 - ※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실신고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('15)하고, 충분한 홍보를 위해 유예기간 설정

③ 동물소유자 관리의무 강화

□ 동물로 인한 주민간 갈등 예방 및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동물 소유자의 책임·의무를 확대하고 위반 시 처벌 강화('16)

○ 맹견의 경우 보호자 없이 외출 금지하고 동반 외출 시 목줄 외에 입마개 등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

- 맹견의 정의를 구체화·합리화*하고, 맹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조치 위반 시 과태료 상향 조정**

* (현행) 특정 견종 및 그밖에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 개 → (개선) 견종, 사육목적(경비, 사냥 등), 개체특성 등 고려하여 재설정

** 예시 : (현행) 50만원 이하 → (개선) 300만원 이하

※ 영국(위험견법)의 경우 목줄·입마개 미착용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천파운드(약 830만원)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

○ 동물 소변에 대한 수거 의무를 확대*하여 주민 불편 및 민원 해소

* (현행) 평상·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 → (추가)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·계단 등 건물내부의 공용공간

○ 안전조치·배설물 수거 의무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동물소유자 법규 준수 의식 강화를 위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*

* (현행) 1차 위반 5만원, 2차 7만원, 3차 이상 10만원 → (개선)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향조정

<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'14	'15	'16	'17	'18	'19
일 정	○등록방법 일원화						
	○가등록 등 등록제 보완						
	○변경신고 시스템 개선						
	○동물소유자 관리의무 강화						

나 유기·유실동물 관리 강화

◇ 유기·유실동물의 보호수준 및 반환입양률 제고

- 입양활성화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위한 동물인수제 도입
- 반환·입양률 제고를 위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확대

* 직영 동물보호센터 : ('13) 25개소 → ('16) 30 → ('19) 35

□ 동물유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지자체가 소유권 포기 반려동물을 인수하여 보호·관리하는 동물인수제 도입(동물보호법 개정)

- 지자체의 구조·보호조치 대상 동물에 소유권 포기동물을 포함하고 유기동물에 준하여 처리*(원하는 시도 시범실시 후 전국 확대 검토)
 - 동물보호단체, 동물병원 등과 협조하여 입양·기증을 최대한 유도하고, 미 입양시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포기여부 재확인

* 유기동물 처리 : 입양, 기증, 안락사, 자연사 등

- 숙려기간, 전문가 상담, 포기 원인에 따른 동물 문제행동 교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무분별한 동물 포기 방지

-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나 민간 시설 및 전문가*를 활용하여 상담·교육·훈련 프로그램 등 운영

* 동물병원·동물보호단체·애견단체·훈련소 등

- 동물 포기시 동물의 보호·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등 징수*

* 동물 유기시 과태료(1차 30만원)와 유기동물 구조·보호비용(마리당 약 11만원)의 중간 수준으로 설정

□ 유기동물 보호수준이 높은*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관리·지원도 강화

○ 광역시 및 유기동물이 연간 1,000마리 이상 발생하는 시·군·구에 직영 동물보호센터가 설치되도록 시설설치비 지원** 지속

*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는 민간위탁시설보다 반환율·입양률이 높고 안락사율은 낮은 등 동물보호·복지 측면에서 지속 확대할 필요

** 4개 광역시 및 10개 시·군·구 설치 필요, 개소당 3억원씩 42억 소요 예정 : 현행 10억원(국비 30%)인 총사업비를 실제 설치비를 고려하여 상향조정도 추가 검토

< ('13) >

		()						
								*
25 (6.9%)	16,703 100%	1,993 11.9%	5,033 30.1%	30 0.2%	3,927 23.5%	3,018 18.1%	2,702 16.2%	
336 (93.1%)	80,494 100%	7,983 9.9%	22,252 27.7%	587 0.7%	18,277 22.7%	20,893 26.0%	10,502 13.0%	
361 (100%)	97,197 100%	9,976 10.3%	27,285 28.1%	617 0.6%	22,204 22.8%	23,911 24.6%	13,204 13.6%	

* 기타: 보호조치중, 방사(고양이에 한해 중성화수술(개체수 증식억제) 후 방사), 미포획 등

○ 직영 동물보호센터 부지 확보, 질병관리 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규제 완화 추진

- 개발제한구역내 직영 동물보호센터 신·증축 제한 완화*(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)

* (현행) 기존 동식물시설을 활용하여 설치 가능하나 기존 시설 부지 초과 불가 → (개선) 지자체 직영 시설의 경우 기존 용도·규모에 관계없이 설치 가능

- 규모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건축물 용도를 세분화하여 소규모 시설의 입지제한 완화*(건축법 시행령 개정)

* (현행) 동식물 관련 시설 → (개선) 소규모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분류

- 직영 동물보호센터내 동물병원 개설시 동물병원에 대한 건축물 용도 적용 완화*(건축법 시행령 개정)

* (현행) 근린생활시설 → (개선) 동물보호센터(동식물관련시설)내 동물병원 개설 허용

○ 동물보호센터 운영 표준화 도모 및 센터내 동물학대, 회계 처리 등에 대한 관리·감독 강화(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* 마련)

* 주요내용 : 동물보호센터 인력·시설기준, 구조·포획, 보호·관리, 질병 관리, 반환·입양, 인도적 처리, 회계 등 세부사항 규정

○ 동물보호센터 안락사 담당 인력 등에 대해 정신적 치료비 및 전염성·폐사율이 높은 질병에 대한 백신·진단키트* 등 지원

* 심장사상충·파보·디스토퍼 진단키트 및 개·고양이 종합백신

- 직영뿐만 아니라 위탁 동물보호센터도 지원*(시도가축방역사업 활용)

* 살처분 동원 인력에 대한 심리치료비(상담·진단비 및 약물치료비) 지원 준용

* 백신·진단키트 사업물량 및 사업비 : 9만마리/2,700백만원(국비 70%)

□ 유기동물의 인수공통전염병 감염실태*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질병방역 및 공중보건위생 향상 도모

* 유기동물은 야생동물과의 접촉가능성이 높아 전염병 전파 위험이 큼

○ (검사대상)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하거나 TNR 실시한 동물

○ (검사기관) 시·도 가축위생시험기관

○ (대상질병) 광견병, 결핵,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전염병

○ (조치사항) 검사결과 질병발생 확인시 시·도 가축방역부서와 연계하여 동물보호센터, 포획장소 등에 대한 신속 방역 실시

□ 유기·유실동물의 체계적 보호·관리를 위해 **사설보호소의 임의 구조·보호 및 애니멀호더(animal hoarder) 단계적 축소·금지**

○ 사설보호소 및 애니멀호더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('15)

《개선방안 주요내용(안)》

- 보호동물에 대한 중성화수술을 실시*하여 마리수 증가 방지
 - * 사업물량 및 사업비(안) : 1만마리/1,000백만원(국비 50%)
- 보호동물을 지자체 직영 또는 민간위탁 동물보호센터, 동물보호단체 등으로 인계 유도
-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동물수 제한*
 - * 예시 : 일정 마리수 이상 소유 금지 또는 세금 부과 등
- 유기·유실동물은 반드시 지자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도록 하여 개인·사설보호소 등이 임의로 구조·보호하는 행위 금지
 - ※ 농식품부·지자체 법인 동물보호단체의 경우 회원의 가정집을 활용하여 동물보호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

〈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〉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'14	'15	'16	'17	'18	'19
예 산	○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비	300	300	300	600	600	600
	○직영 동물보호센터 인건비			450	450	450	450
	○백신, 진단키트 지원			1,890	1,890	1,575	1,575
	○사설보호소 중성화수술			500			
일 정	○동물인수제						
	○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시행						
	○직영 동물보호센터 규제완화						
	○사설보호소 축소·금지						

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관리·육성

◇ 반려동물 생산·유통·서비스·전후방산업 기반 구축

- 반려동물 생산·유통 환경 개선을 통한 동물 및 소비자 보호
- 동물미용업·보관업·훈련업 등록(신고)제 신설
- 의료보험,약품 및 사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

□ (생산) 미신고* 동물생산업의 제도권내 편입을 위해 관련 규제를 현실화하고 시설 자금 지원 등 추진

* 소음·악취 등 민원발생 및 축사 입지규제 등으로 대부분 미신고 영업중(약 90%)이며, 구입 동물의 폐사·질병 등 소비자 피해 지속 발생

- 축사거리제한 한시적 유예* 및 거리제한기준 재설정**을 통해 반려동물 생산업 입지제한을 완화하여 영업 신고 유도

* 가축분뇨법 개정('14)에 따라 축사거리제한규정 3년간 유예('15.3.25 시행)

** 환경부농식품부 공동 연구용역('14) 결과에 따라 권고안 또는 법률 개정 추진

- 동물복지형 시설 표준모델을 마련·보급하고, 표준모델에 따라 시설을 개·신축하는 경우 자금 지원*('16)

* 축사시설현대화사업('14년 1692억원) 지원대상에 추가하여 지원

□ (유통) 동물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소비자피해*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연속적으로 개체별 관리

* 반려동물 소비자피해 중 84.5%가 폐사·질병으로 인한 것임('13.1월~'14.3월, 한국소비자원)

- 생산업 단계에서 번식용 동물부터 작성한 개체관리카드가 판매시까지 연계되어 소비자가 이력*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

* 생산-경매-판매 각 단계별로 동물의 건강상태 및 백신접종 기록을 유지하여 불법적인 동물거래 차단 및 소비자 보호

○ 경매업 특성에 맞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* 별도 마련

* 경매단계에서 동물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적정 수준 이하인 경우 거래 제한 등

※ 현행은 경매업과 소매업을 포괄하여 동물판매업으로 규정

○ 인터넷을 통한 동물판매(분양)는 판매업 등록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, 배송과정에서의 동물학대* 방지를 위해 판매자가 직접 배송

* 2-3개월 강아지 진정제 투여 위험, 폐사가능(경향, '13.11.5), 택배 배송 자체를 막아야(경향, '14.1.6)

○ 미등록 영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금 상향조정*

* 예시 : (현행) 100만원 이하의 벌금 → (개정) 300만원 이하의 벌금

□ (서비스업)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규제 합리화 및 신규 업종 관리 강화

○ 동물사체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적용범위, 동물장묘업 시설의 건축물 용도 등을 명확히 하여 동물장묘업 활성화

- 동물장묘업을 통해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적용 대상*에서 제외하고, 동물장묘업 관련 시설의 건축물 용도를 동·식물관련시설로 명확화** 추진('15)

*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정의에 동물의 사체가 포함됨

** 녹지지역·관리지역 등 설치 가능한 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입지제한 완화

○ 동물미용업·훈련업·보관업 등에 대한 등록(신고)제 신설('16)

- 현재 민간단체에서 운영중인 미용, 훈련 자격증을 국가자격증으로 전환하고, 영업 등록시 자격증 취득 의무화도 검토(고용노동부 협의)

□ (전후방산업) 반려동물 의료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신성장산업으로서 사료·동물약품 개발 등 지원

○ 동물소유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높은 진료비로 인한 유기 및 안락사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보험 시장 활성화

※ 반려동물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추진('14)

- ① 표준 진료범위 설정,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공동 홍보 등 인프라 구축 방안
- ② 반려동물 개체별 신원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험금 부정 청구 등 예방 방안
- ③ 동물등록 및 보험가입시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

○ 반려동물 사료의 국산화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건강기능사료 등 고부가가치 분야 기준* 보완 및 시설 지원

-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시설 개·보수 지원으로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(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, '15년 40억원)

* 건강기능사료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('14)

○ 동물용의약품 시설현대화 및 해외시장 개척사업 지원시 반려동물 분야도 포함하여 추진

- 국제기준의 우수제조시설(GMP) 20개소 육성 지원과 해외전시회 참가,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, 국가 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

<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'14	'15	'16	'17	'18	'19
예산	○동물생산업 시설 지원			3,000	3,000	3,000	3,000
	○반려동물의료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	50					
	○건강기능사료 기준 및 규격 연구용역	30					
	○동물용의약품 생산시설 현대화	15,300	10,578	10,578	10,578		
일정	○반려동물 이력관리						
	○미용·훈련·보관업 등록제						

라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

◇ 길고양이 적정 개체수 조절 및 관련 민원 해소

- 길고양이 중성화 표준지침 마련 및 중성화사업 지원
- 민간 자원봉사자와의 협조 강화 및 주민간 갈등 해소

□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의 통일적 실시 및 개체수 조절 제고를 위해 표준지침 마련 및 사업비 지원 추진

- 대상기준, 포획방법, 후처치기간, 군집별 실시 범위, 방사위치 등 전반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
- 개체수 조절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군집별 집중 실시가 가능하도록 국비 지원* 신규추진

* 길고양이 개체수 통계 확보 및 중성화사업 연차별 실행계획 등을 세운 지자체에 우선 지원

□ 길고양이 포획 및 방사후 사후관리, 중성화사업의 취지·효과 홍보 등을 위해 캣맘* 등 민간 자원봉사자 적극 활용

- * 주인없는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먹이거나 자발적으로 보호활동을 하는 사람
- 캣맘 등에 대해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중성화 수술 전후 협조 및 홍보 등 공적 역할 부여

※ 길고양이 무분별한 증가 방지를 위해 중성화 고양이에게만 음식 제공 등 캣맘 활동도 제한

<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'14	'15	'16	'17	'18	'19
예산 일정	○길고양이 중성화 지원			1,000	2,000	3,000	4,000
	○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침 시행						

가 축종별 최소 준수기준 강화

◇ 동물복지 저변화를 위해 **축종별 준수사항 강화**하고, 동물복지형 **축사운송차량도축장 가이드라인** 보급 및 자금 지원

○ 동물복지 지정 운송차량(대)/도축장(개소) : ('13) - → ('16) 30/10 → ('19) 200/20

① 사육단계

□ 우리나라 축산환경을 고려하여 축산농가가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「보편적 동물복지 기준」 마련 추진

○ 가금류 강제환우, 폐쇄형 케이지 및 임신돈 스톨 사용 제한 등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제시('16년 연구용역* 실시)

* 축종별 실태조사, 축산환경을 고려한 한국형 동물복지 기준, 적용 시기 등

□ 동물복지형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정책자금 인센티브 부여

○ 동물복지를 고려한 축사시설에 대한 **축종별 가이드라인** 마련('15)

- 다단식 산란계 사육시설, 동물복지형 돼지 임신·분만틀, 돼지 군사(무리사육) 장치, 축사 설계도 등 표준모델 제시(연구용역 추진중)

※ 축산관련종사자 교육내용에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가이드라인 추가

○ 축사시설을 동물복지형으로 **신개축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***

*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단가한도 상향조정 및 지원대상 확대(연구용역 추진중)

□ 축산업 허가제상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에 대한 정기 교육 및 지도·점검 강화

- 허가대상 농가 등은 허가를 받기 전에 일정교육 이수(8~24시간) 토록 하고, 그 후 2년마다 보수교육(6시간) 실시('16)
- 허가제 준수여부 확인 및 지도를 위하여 지자체간 교차점검, 관계기관동물 보호명예감시원 합동점검 등 정기(연 2회 이상) 및 수시 모니터링 추진('16)
 - ※ 축산법상 허가제 위반시에는 개선명령 및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, 축산 정책사업(사료구매자금, 시설현대화사업 등) 지원 배제 추진
- 선진국 기준을 고려하여 사육밀도 재정비 검토(축산법시행령 개정)('15~)

② 운송단계

□ 운송과정에 대한 동물복지 의무규정 확대 및 점검 강화

- 축산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운송밀도* 및 급정거 대비 장치 등 차량구조 관련 운송업자 의무사항 추가('16)
 - * 동물운송세부규정상의 운송소요면적을 참고하여 적정 기준 마련
- 동물복지 운송규정 위반행위*에 대한 지도·점검 강화
 - 검역본부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중앙기동점검단(가칭)을 통해 상시 점검
 - ※ 도축장 하차대 CCTV 등 시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 활용
 - * 상하차시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 다치게 행위 및 전기몰이 도구 사용 등

□ 동물복지 운송 가이드라인 보급 및 동물복지형 운송차량 신규 지원

- 동물복지 운송차량 모델 및 동물 운송자 매뉴얼 개발·보급*('17)
 - * 칸막이, 환기 및 가림막 시설 설치, 운송자 준수사항 등

- 운송과정에서의 동물복지 수준 및 축산물 품질 제고를 위해 동물복지형 운송차량 구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*
 - 축협조합 및 동물복지 지정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무진동, 냉난방 및 급수시설 등 특장설비를 갖춘 차량 구입비 지원
 - * '15년 예산안 : 대당 13천만원, 5대 지원(보조 40%(국비 20, 지방비 20), 용자 40%)
 - ※ 동물복지 지정 운송차량(대) : ('15) 10 → ('16) 30 → ('19) 200
- 동물복지 운송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권역별 교육 실시('16, 검역본부)
 -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에도 동물복지 운송 교육 프로그램 추가

③ 도축단계

- 인도적 도축을 위한 동물복지 의무규정 마련 및 점검 실시
 -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도살되는 비율에 대한 최소 기준 등 설정('17)
 - ※ 도축장에서 전기기절시킨 돼지 7,089마리 가운데 12.3%인 874개체가 의식 회복후 도축 추정(전국 23개 도축장에 대한 동물복지 실태조사, '09 검역본부)
 - 동물복지 도축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·점검 강화
 - 검역본부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중앙기동점검단(가칭)을 활용하여 상시 점검
 - ※ 도축장 전살대 등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 등 확인
- 동물복지 도축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, 도축장별 자체 동물복지 전담 직원 지정제 도입
 - 동물복지형 도축장의 표준 시설 및 작업 매뉴얼 개발·보급('16)
 - 동물복지 도축 교육 프로그램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교육 의무화*('16~)
 - * 우선 동물복지 지정 도축장에 대해 적용하고, 거점도축장 등으로 점차 확대

○ 일정 규모 이상 도축장은 동물복지 전담 직원을 지정토록 하여 동물복지 기준 준수여부 확인점검, 시설작업방식 개선 등 수행('16)

※ 검역본부에서 동물복지 전담 직원에 대한 동물보호·복지 교육 실시

- 정기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

- 도축검사관*은 현장에서 동물복지 전담 직원 지도·감독

* 농식품부, 식약처, 시·도 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및 「수의사법」 제21조에 따른 공수의

□ 동물복지형 도축장 시설지원 및 우수 도축장 인센티브 부여

○ 동물복지형으로 도축장을 개보수하는 경우 자금 지원 추진('16)

※ 동물복지 지정 도축장(개소) : ('15) 5 → ('16) 10 → ('19) 20

○ 동물복지 수준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급식 납품업체 선정에 반영 등

④ 살처분(가축전염병 발생시)

□ 살처분시 투입인력 및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 구비 유도 및 교육·치료 실시

○ 지자체 방역교육훈련 내용에 축종별사육방식별 구체적인 살처분 장비 및 방법* 추가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통합정보 제공

* 동물의 특성에 따른 작업시간, 축사형태에 따른 기질 방법, 가스주입속도 등

※ 인도적 살처분에 대한 구체적 요령 제작 및 지자체 교육·홍보

<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'14	'15	'16	'17	'18	'19
예 산	○동물복지 최소기준 연구용역			50			
	○동물복지형 축사시설 지원		3,000	3,000	4,000	4,000	5,000
	○동물복지형 운송차량 지원		390	780	2,340	3,120	4,680
	○동물복지형 도축장 시설 지원			1,000	2,000	2,000	2,000
일 정	○운송·도축 교육 실시						
	○동물복지 전담 직원 지정제						

나 동물복지 인증제 확대·정착

◇ 동물복지 인증 확대를 통한 고품질·윤리적 축산물 유통 활성화

○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비중 : ('13) 1% → ('16) 4 → ('19) 8

① 동물복지 인증제 개편 및 축종 확대

□ 상위인증으로 전환 유도 및 생산·소비자 이해도 제고를 위해 상·하위 축산 인증제간 실천기준의 포함관계 명확화

○ 유기는 동물복지·무항생제, 동물복지는 무항생제 인증기준 포괄

※ 축산 인증제 통합·체계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 실시('14)

□ '동물복지축산농장' 인증제를 '동물복지축산물' 인증제로 개편하여 인증의 범위를 사육에서 운송-도축까지 확대

○ 동물복지 운송차량·도축장 지정제의 법적 근거 명확화*하여 사육-운송-도축 전 과정에 이르는 농장동물 복지체계 구축('16)

* (현행) 동물복지 운송·도축기준 준수한 경우에만 육류 축산물에 인증표시 가능 (동물보호법 시행규칙) → (개선) 동물복지 운송차량·도축장 지정 근거 마련(동물보호법)

□ 동물복지 인증대상 축종을 주요축종 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*

○ 유기·무항생제 인증**과의 연계, 산지생태축산*** 적합축종 등을 고려하여 인증 축종 다양화

* ('14) 육계 → ('15) 한육우·젓소·염소 → ('16) 오리·사슴·메추리 등

** 유기·무항생제 인증 축종 : 소, 돼지, 닭, 오리, 메추리, 사슴, 산양(염소)

*** 자연 그대로의 산지를 최대한 활용,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 및 환경 친화적 축산물 생산 추구

② 축산농가 참여 유도

- 초기 투자비용으로 인한 소득감소 부담을 해소하여 동물복지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직불제 도입
 - 적정 사육밀도를 통한 환경오염 감소, 면역력 강화를 통한 질병예방 등 동물복지 축산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적정 직불금 지급방안 마련
 - * 현재 순차적으로 도입중인 점을 고려하여, 초기 농가소득 감소정도, 생산성 회복기간 등에 대한 연구용역('14) 후 직불금 지급 추진('16~)
-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기 위한 축사시설 및 환경, 사양 관리, 입식 및 출하 등에 관한 표준매뉴얼 개발·보급('15)
 - 좁은 국토여건, 사육품종 등을 고려하여 한국형 표준 매뉴얼 개발
 - 축종별 세부 인증기준 및 절차, 시설 및 농장관리 실무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(동영상 등 활용)을 마련하여 생산자단체, 계열사, 지자체 등 관련 기관·단체에 배포 및 교육 실시
 - * 축산과학원에서 교육프로그램 마련,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및 농업기술센터 영농교육 등에 포함
-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에 따른 생산성 변화 등 경제적 효과 및 소득증대를 위한 경영 개선방안 등 농가 맞춤형 정보 제공
 - 동물복지 인증 이후 돼지 MSY, 질병발생률 및 폐사율 등 생산성 측면에서의 효과, 기간별 수익성 등 제시
 - 동물복지 체험농장을 조성하여 어린이·청소년 동물복지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수익사업 확대(6차산업화 연계)
 - *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동물보호단체 또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참여 추진

<우수사례>

- S목장 : 대표적인 목장형 관광지로, 목초지를 조성하여 농촌경관 보존



- F농장 : 낙농체험목장으로 연령대별로 교육프로그램 개발, 목장 안에 캠핑장·수영장 운영



- P문화원 : 국내 최초 돼지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로서 체험 프로그램, '피그사파리' 산책로, 짬질방 등 운영



③ 사후관리 강화 및 유통체계 구축

- 지속적인 복지수준 유지를 위하여 동물복지 인증농장에 대한 정기·불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취소 등 조치

- 연1회 정기점검 및 불시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증표시의 제거·변경·정지, 인증취소 등 필요한 조치 실시

*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사후관리 및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 근거 마련

□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인증농장 보호를 위해 동물복지 유사표시 금지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('15)

○ '동물복지, '방목, '방사' 등 동물복지 인증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제한

※ 현재 시행규칙에 있는 표시제한 규정을 법으로 정하고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

□ 안정적 수요·공급 확보 및 인증 축산물 유통 활성화

○ 농가를 조직화*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축산물로 상품화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(농협, 영농법인 등) 등 산지유통 및 도매주체 육성

* 인증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인증농가 조직화를 통한 물량 확보 및 출하시기 조정 등 필요

- 축산물 매입비용 등 해당주체의 운영 자금 일부(예시 : 용자 80%, 3%) 지원('15~)

※ 기존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사업(직거래매취자금, 판매장 설치자금 등)의 내역사업으로 편성하거나, 별도의 촉발기금 사업 신설 추진

○ 산지조직(농협, 영농법인 등)이 소비지매장(생협, 한살림, 농협소매매장 등)에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형 유통체제 구축

※ 조기 판로 확대를 위해 전용 판매장 설치 지원 및 생협 등이 생산자와 직접 거래할 경우에도 운영자금(직거래매취자금) 지원 추진

○ 소비자 의식 확산 및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-생산-유통주체-동물보호단체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 홍보('15)

<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'14	'15	'16	'17	'18	'19
예산	○인증제 체계화 연구용역	20					
	○동물복지 축산 직불제	45 (연구)		1,000	3,000	3,000	7,000
	○동물복지형 축사시설 지원		3,000	3,000	4,000	4,000	5,000
	○동물복지형 운송차량 지원		390	780	2,340	3,120	4,680
	○동물복지형 도축장 시설 지원			1,000	2,000	2,000	2,000
일정	○동물복지축산물 인증제로 전환						
	○축산물 유통기반 구축						

가 동물실험 관련 국가 공통 지침 마련

◇ 실험동물을 윤리적으로 취급하도록 동물실험지침 및 사육 기준을 마련하고, 동물복지실험기관(가칭) 지정제 도입

○ 동물복지실험기관 지정 : ('18) 5개소 → ('19) 10

□ 동물실험에 대한 통일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부처 합동으로 국가 공통 동물실험지침 제정

○ 미래부·교육부·식약처 등과 공동으로 '실험동물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'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('17)

- 3R원칙을 기반으로 한 동물실험의 윤리적 측면 및 최소한의 복지 수준 확보를 위한 실험동물 종별 사육·관리기준 등 포함

※ 일본 등 외국에서도 동물실험의 주요 활용자와 연관된 과학 및 교육부처와 공동 가이드라인 개발 운용으로 실효성 강화

□ 동물실험지침 교육 의무화 및 실험동물 관리 전문인력 양성

○ 동물실험시행기관 주관으로 소속 실험수행자에 대해 동물 실험지침 및 동물윤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의무화('18)

○ 일정규모 이상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의 경우 실험동물인정수의사 또는 실험동물기술원* 등 전문가 채용 권고

* 한국실험동물학회(우리부 법인)에서 발급하는 국내 유일의 실험동물 전문 자격증

- 동물실험지침 준수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이 우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에 대한 “동물복지실험기관(가칭)” 지정제 추진(‘18)
- 동물복지실험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**현판 부착** 및 **지정 표시** 할 수 있도록 하고 **정부포상** 등 추진
-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시스템에 지정 받은 기관 명단을 공개하고, 3년간 **현지 지도·감독 제외***

* 윤리위원회의 연1회 서면보고로 대체하되, 필요시 점검 및 지정취소 등 조치

<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'14	'15	'16	'17	'18	'19
예산	○동물실험지침 연구용역				100		
	○동물실험지침 시행						
일정	○동물실험 전문인력 양성						
	○동물복지실험기관 지정제						

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내실화

◇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권한·전문성 강화 및 운영 가이드라인 보완

- 동물실험 ‘심의·승인’ 권한에 ‘승인후 감독’ 권한 추가 및 위원 교육 강화
- 윤리위원회의 표준화된 운영을 위해 가이드라인 개정·보급

- 동물실험시행기관에 대한 관리·감독 강화를 위해 **윤리위원회** 설치를 의무화하고 **권한 및 전문성 강화**(‘16)
- **윤리위원회** 설치를 의무화하여 실험시행 이전의 **실험동물** 사육·관리 등에 대한 **관리 강화**

※ 현행법상 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동물실험을 한 경우만 처벌

- 윤리위원회의 현행 동물실험 ‘심의·승인’ 권한에 ‘승인후 감독(PAM, Post Approval Monitoring)’ 추가
 - 윤리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실무교육 의무화
 - 일정기간(3년) 후 재교육 받도록 하고,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윤리위원을 대상으로 한 기초-심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문성 유지·보완
 - 민-관 협조체계 구축 및 정보공개 등을 통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지도·감독 효율성 제고(‘16)
 - 관련 학회, 협회 등 민간기관을 통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지도·감독
 - 민간기관 지도감독 결과 문제되는 기관 위주로 검역본부지자체 등 점검
 -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 명단, 행정처분 내역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실험시행기관 및 윤리위원회 책임성 제고
 -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온라인 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·보급
 - 현행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시스템을 내·외부망으로 분리하여 관련 정보 효율적 관리 및 이용자 불편 해소(‘17)
 - ‘위원회 표준운영 가이드라인’*을 보완하고, 윤리위원회 간사 대상 워크숍을 개최하여 기관별 정보교류 및 의견교환(‘16)
 - 윤리위원회 심의사항, 평가기준 등에 대한 표준화된 세부지침 보완
- * 농식품부(동물실험윤리위원회 소관)와 식약처(실험동물운영위원회 소관) 공동 제정(‘11)

<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'14	'15	'16	'17	'18	'19
예산 일정	○윤리위원회 교육워크숍	10	10	20	20	20	20
	○윤리위원회 권한 강화						
	○윤리위원 보수실무교육						
	○동물실험 관련 정보공개						

다 불필요한 동물실험 금지 및 대체실험법 보급

◇ 동물실험의 3R원칙*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해 불필요한 실험은 금지하고, 대체방법 보급

* 동물실험 대체(replacement), 실험동물수 감소(reduction), 고통최소화(refinement)

□ 담배·알콜 및 기타물질(농약, 폐수 등)의 위해 등을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불필요한 독성실험 금지 추진(동물보호법 개정)

○ 새로운 유해성을 밝히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단순 시각적 효과를 위한 동물실험은 대체실험 및 기존 연구실험결과 활용

□ 화장품 완제품 및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제한(식약처 협의)

○ 동물실험 대체방법의 개발·상용화 정도에 따라 완제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동물실험 원칙적 금지 추진

- 완제품에 대한 금지 이후에는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 금지여부 검토

※ 유럽은 '04년 완제품, '09년 원료에 대해 동물실험을 금지하였으며 '13년부터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의 수입·판매 금지

※ 인도·이스라엘에서도 화장품과 그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 금지, 중국은 '14.6월부터 대부분의 화장품 및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 의무조항 삭제

< 우리나라 화장품 동물실험 관련 규정 : 화장품법 >

◇ 식약처장이 자료제출을 면제한 원료 외의 원료를 사용한 기능성 화장품은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독성시험시 동물실험 실시

◇ 동물대체시험법 등 과학적·합리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시험도 인정

※ 식약처는 화장품 동물실험이 현장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금지 필요성이 낮은 반면, 금지 규정 신설로 인해 안전성 검증 및 신원료·신제품 개발이 저해될 수 있다는 입장

□ 초·중·고교생 대상 동물실험의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보조교재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, 원칙적으로 금지 추진(교육부 협의)

- 생체해부 등의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모형·동영상 등 교재 개발 및 동물실험 가이드라인 마련('16)
- 초·중·고교생이 수행하는 동물실험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, 필요한 경우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

□ 동물실험 대체실험법에 대한 정보공개 및 교육 강화('15)

- 한국 3R정보센터,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시스템 등을 통해 동물실험 대체법 관련 국내외 동향 및 세부 방안 등 공개
 -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윤리위원회 대상 교육시에도 관련 내용 활용

<동물실험 관련 주요 해외동향>

구 분	추진경과	주요 현황	법령·제도 특성
OIE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'02년 동물복지 작업 그룹 구성·운영 •'05년부터 동물복지 기준 제정 추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'11년 실험동물기준 제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권고가이드
EU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80년대부터 동물 실험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시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'86년 과학목적 동물사용 특별법 제정 •'10년 실험동물 보호를 위한 특별법 운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법령 운영 •'13년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전면 시행중
미 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60년대부터 동물실험 기준을 운영하였으며, 점진적 확대 추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'66년 동물복지법 제정·운영(농무부) •'85년 확대보건연구법 제정·운영(보건부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동물복지법에서 조류, 마우스, 랫트는 적용 제외 (전면 개정 요구 논란)
일 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60년대부터 법령 제정운영 •법령상 의무규정 보다는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 중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'66년 동물애호관리법 제정(농림수산성) •'80년 실험동물 사양 보관 기준(총리부 고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농림수산성, 후생노동성 등과 합동 운영하는 추세 •법령 기준 모호 (가이드라인 중시)

<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'14	'15	'16	'17	'18	'19
예산일정	○동물실험 대체 교재 개발			200			
	○초·중고 동물실험 금지						

가 추진기반 정비

- ◇ 업무효과성 제고 및 내실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조직인력예산 확대
- ◇ 경찰 등 관계기관 협조 강화 및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
- ◇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개선 및 정책대상자 교육 편의 제고

① 전담조직인력 확보 및 동물보호기금 설치

- 급증하는 동물보호·복지 업무에 적극적·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에 동물복지과(가칭) 신설 등 조직 개편 추진
 - 반려동물 증가, 동물 이용의 윤리성 측면에 대한 관심 제고로 업무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 총괄·기획 인력 확충 필요*
 - * 검역본부 동물보호과(현 9명)의 인력을 반려·농장·실험동물 분야별 2명 내외로 축소하고, 농식품부의 담당 인력(현 2명)을 부서 단위로 확대
 - 시도 및 시·군·구 인력·조직을 확충하여 방역 업무와 구분 운영
- 지자체 실적평가, 공표, 포상 등을 통해 업무담당자 사기 진작
 - 동물보호·복지 분야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포상 등에 반영하고,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우수사례 공유 등
 - ※ 우수 지자체담당자 해외선진지 견학 프로그램 추진
- 동물보호·복지 향상 및 국민의식 개선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시도 및 시·군·구에 동물보호기금 설치 추진(동물보호법 개정)

- 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자 출연금*, 반려동물 소유자 기여금, 기금 운용 수익금,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등으로 재원 조성

* 생산자단체, 동물실험시행기관, 동물판매업자, 동물보호단체 등

- 동물보호·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·홍보, 유기·유실동물 및 길고양이 관리, 정책연구용역 등에 사용

② 관계기관 및 민간과의 협조 강화

- 동물학대, 유기동물의 구조·포획 등과 관련하여 경찰·소방서·수의사회 등과의 민-관 협조체계 구축('15)

- 현장대응을 위해 지자체별 동물보호 담당자·경찰·소방서·동물병원 등으로 구성된 민-관 합동 T/F 운영

※ 동물학대·유기동물 신고시 대응방안 및 행정절차, 응급진료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협조 강화

- 경찰·소방서 직원을 대상으로 동물보호·복지 관련 교육 지원

- 동물보호·복지 업무담당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제 도입 및 중앙-지자체 합동 점검단(가칭 중앙기동점검단) 구성·운영

- 검역본부 및 지자체 담당자가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단속업무에 대해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(법무부 협의)

- 동물학대,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위반, 미등록·미신고 영업 등 형사처벌 대상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단속

※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

- 농식품부 또는 검역본부 및 지자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기구를 구성하여 분야별 현장* 지도·감독 실시('15)

*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, 축산농장 및 도축장, 동물실험시행기관 등

□ 동물복지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보완하고, 분과위원회 설치 및 정책포럼 실시

- 위원회 구성을 15명으로 확대(현행 10명)하여 다양성·전문성 제고, 농식품부 업무담당자를 포함하여 운영 효과성 제고('15)
- 위원회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('15) 및 정기적 정책포럼 등 실시('16)

□ 동물보호감시원 및 명예감시원 제도 내실화를 통해 상시적·체계적 민-관 협력 기반 구축

-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활동영역 및 권한, 동물보호감시원과의 업무분담 등에 대한 활동매뉴얼 마련('15)
 -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민원인이 아닌 동물보호 정책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정
-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전교육 강화 및 사후 워크숍 등 보수교육 의무화('16)
 - 사전교육시 동물보호법령, 정책 및 행정절차, 명예감시원 역할 및 활동매뉴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
 - 사후 워크숍은 동물보호감시원 등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합동으로 실시하고, 지자체별 우수 사례 공유 및 의견 교환

< 민-관 협력 동물학대 해결사례 >

- 동물학대* 현장을 지자체 담당공무원, 경찰, 동물보호단체, 방송사에서 합동 단속
 - * 식용개 사육장에서 개를 삽으로 가격하여 죽이는 등 학대행위 발생('14.8월)
 - 경찰 :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
 -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보호단체 : 피학대동물 구조·격리보호
 - 방송사 : 해당 내용 취재·방영을 통해 동물보호의식 제고 및 경각심 고취

③ 정책대상자 편의 제고

-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지속 보완정비를 통해 지자체, 동물등록대행자, 동물보호센터 등의 업무효율성 제고 및 유기·유실동물 신고·공고, 동물보호법령·정책 정보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 품질 개선
 - 노후서버 및 기반장비 교체, 관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, 사용자 증가 대비 서버보완 등 지속 추진
- 교육채널 다양화를 통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, 동물보호명예감시원, 동물실험윤리위원 등에 대한 교육 편의성 제고('14~)
 - 오프라인 교육일정이 영업개시일과 맞지 않아 불편을 겪는 등 교육으로 인한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등 개발·운영

<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'14	'15	'16	'17	'18	'19
예산 일정	○동물복지위원회 운영비			20	20	20	20
	○동물보호기금 운용						
	○특별사법경찰관리제 도입						
	○동물복지 분과위원회 운영						
	○영업자 온라인교육 운영						

나 정책기반 공고화

◇ 전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교육·홍보 강화

- (1단계) 교육·홍보 프로그램 및 콘텐츠 마련 → (2단계) 교육·홍보 전문인력 육성 → (3단계) 초중고 제도교육 및 사회민간교육에 접목

◇ 반려동물 수 등 기초 통계자료를 보완하여 정책신뢰성 제고

① 대국민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·홍보

□ 대국민 교육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동물보호·복지 표준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교육·홍보 효과 제고

○ 반려농장실험동물 분야별 표준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마련(16)

- 검역본부·축산과학원 등 관계기관, 수의·축산·교육 등 관련 전문가, 동물보호단체·애견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·운영

※ 관련 단체·기관 등의 기존 교육자료 및 미국·일본·유럽 등 해외 사례 참고

○ 분야별 표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전문 교육인력 육성

- 교육인력 육성 과정을 개발하고, 해당 과정의 운영기관 지정 및 과정 수료한 자에 대한 이수증 발급 추진

구 분	운영기관(예시)	활용 계획
반려동물과정	대한수의사회 등	·과정수료시 이수증 발급 ·교육시 강사 초빙 우대
농장동물과정	축산건설팅협회 등	
실험동물과정	실험동물학회 등	

□ 초·중·고교 정규 교육과정 및 대학 강의에 포함(교육부 협의)

- 가치관 형성기의 초·중·고교생을 대상으로 동물보호·복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생명존중의식 향상 및 정서순화
 - 동물실험 대체실험법 등 관련 교사연수 프로그램도 마련
 - ※ (현행) 도덕·실과 등에 일부 포함, 초등학교 '창의적 체험활동'시간을 활용한 동물 보호 교육프로그램 지원 중 → (강화) 초·중·고 정규교육(과학·윤리 등)에 확대 적용
- 수의·축산·반려동물 등 관련 학과의 경우 동물보호·복지 강의 개설 의무화

□ 반려동물 소유자 책임의식 제고 및 대국민 동물보호·복지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·홍보 강화

- 반려동물을 기르는데 필요한 기본상식, 관련 법령, 훈련방법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및 가이드북 제작·배포*(‘14)
 - * 지자체, 동물보호센터, 동물판매업소, 동물병원, 동물미용업 등에 비치
- 동물보호센터를 활용하여 반려동물 문화교실 개설·운영
 - 유기동물을 구조·보호하는 공간을 교육, 홍보, 체험을 포함한 반려동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효과 극대화
 - ※ 교육내용(안) :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및 책임있는 반려동물 소유자 의식, 반려동물을 기르는데 필요한 사항, 기본적 훈련방법 등
- 동물보호의 날 및 동물보호주간(가칭)을 정하여 관련 행사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국민의 관심과 이해 제고
 - 세계 동물보호의 날인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하고, 그 날로부터 1주일을 동물보호주간으로 설정(안)
 - ※ 일본의 경우 동물애호및관리법에서 9.20~26일을 동물보호주간으로 설정

참고

동물보호·복지 관련 교육 프로그램(안)

구분	대상	실시 방안	실시기관	비 고
제도 교육	유치원	유치원 방문 교육	동물보호 단체	반려동물 이야기를 중심으로 동물보호·관리 교육
	초중고	관련 교과에 올바른 동물보호·관리 교육	정규 교육 기관	교육부와 협의, 전교조·교총 등 관련단체 협조 우선 교과지도서에 반영하고 추후 교과서에 반영토록 추진
	대학(원)	동물윤리학·동물실험윤리학·동물복지학 등 관련 강의 개설	대학(원)	수의학, 의학, 약학, 생물학 등 동물 관련 학과 및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학과
사회 교육	반려동물 관련 영업자	영업등록·신고시 의무교육	교육 기관	동물보호법, 동물의 올바른 취급과 예방접종의 중요성 등
	반려동물 소유자	반려동물 문화교실운영	동물보호 센터 등	소유자 의무사항, 올바른 사육방법, 책임감 고취 등
	축산농가	축산관련종사자 교육 및 영농교육 시	교육 기관	농장동물 복지 개념 및 필요성
	동물실험 시행기관 및 윤리위원회	민간기관 주관으로 자율 교육 유도	실험동물 학회 등	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 등
	유기동물 보호소 관리자	집합 교육	농식품부	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방법 등
업무 관련 교육	동물보호 감시원	교육기관 선정 교육	농식품부	동물보호법 주요내용 및 동물보호감시원 임무 등
		공무원 교육전문기관에 동물보호·복지과정 개설	교육원	동물보호법 주요 내용 및 동물보호 국제동향 등
	명예감시원	집합 교육	교육기관	명예감시관의 임무, 활동범위 등

② 기초통계 보완

- 반려동물(개·고양이), 유기동물 질병감염 실태, 사설보호소 현황,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현황 등에 대한 정기적 조사 실시
- '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반려동물 포함되도록 통계청과 협의
 - ※ 그전까지는 지자체별 등록대상동물 행정조사, 연1회 동물등록정보 일제 변경신고 기간 운영 등을 통해 반려동물 수 추정
- 전국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일제 점검(연1회)을 통해 유기·유실동물의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감염 실태 파악
 - 시·도 가축위생시험소를 활용하여 질병발생시 신속하게 방역 실시
- 사설보호소에서 보호중인 유기·유실동물의 실태 파악('15)
 - ※ 향후 사설보호소의 유기·유실동물 임의 구조·보호조치 금지를 위한 정책의 정당성 확보 및 추진일정 수립에 활용
-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도입 현황 및 투자운영비용 등 실태조사('14~)
 - ※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단가한도 등 설정시 조사결과 활용
-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대한 통계조사 세분화* 추진(통계청 협의)
 - * 예시 : (현행) 동물용 사료 제조업,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, 애완동물 장모 및 보호 서비스업 → (세분화) 반려동물, 사료, 관련 용품, 수의의료, 장모미용 등 서비스업 등

<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'14	'15	'16	'17	'18	'19
예산	○동물보호복지 표준 교육 프로그램 마련			100			
일정	○초·중·고·대학 교육 확대						
	○동물보호의 날 지정						

다 연구개발 강화

◇ 동물복지분야 연구개발을 확대·체계화하여 정책 수립·집행의 객관적 근거 확보 및 연구 효율성 제고

□ (현황) 우리부(농기평), 농진청(축산과학원), 검역본부에서 각각 추진

○ 연구과제에 대한 중요도, 순서 및 연관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 없이 각 기관별로 과제 추진

- 연구 필요성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미흡하여 과제 채택률 저조

□ (개선방안) 효율적 R&D 추진 및 각 기관간 연계 등을 위하여 동물복지분야 중장기 R&D 기본방향 설정

○ 동물복지분야의 전략적 R&D 운용을 위하여 농진청, 농기평, 실용화재단 및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R&D 기획단 구성('15)

- 중장기 R&D 추진방향 연구를 거쳐 분야별 연구과제에 대한 로드맵 설정 및 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지속 발굴

○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각 기관별로 동물복지분야 연구개발 추진('16~)

- 미래축산포럼* 등 기운영중인 연구과제 발굴·제안기구 적극 활용

* 학계, 연구기관, 업계, 정부 등 50여명, 5개분과(생산성, 친환경축산, 식품가공, 질병방역, 신성장동력)로 구성

<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'14	'15	'16	'17	'18	'19
예산 일정	○R&D 과제 추진		1,000	1,000	1,000		
	○R&D 기획단 운영						

R&D 중점 추진과제(안)

-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과 관련하여 계절·월령 등에 관계없이 중성화가 가능하고 동물복지 측면에서도 더 나은 백신 등 대체방법
- 질병별 유병률, 표준 진료범위 등 표준 진료 프로토콜 정립 등 의료보험 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방안
- 동물소유자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반려동물에게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치료법 및 약품 연구·개발
- 동물복지 인증 이후 돼지 MSY, 질병발생률 및 폐사율 등 생산성 측면에서의 효과, 기간별 수익성 등 경제적 효과 분석
-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개발 및 동물의 행동·발성음 등 생체 정보에 기초한 구체적인 사양관리 방안
- 미국, 일본, 유럽 등 해외 사례 및 국내 기존 교육프로그램을 참고하여 동물보호·복지 표준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
- 3R원칙에 기반한 동물실험 세부절차 및 실험동물 사육기준 등을 포함한 국가 공통 동물실험지침
- 국산 사료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국내산 농축산물을 활용한 고품질 사료, 건강기능사료 개발
- 산란계 강제환우·관행케이지 및 임신돈 스톨 금지 등 우리나라 축산업 여건을 고려한 농장동물 최소 복지기준

VI. 실천계획

1

법령·통계 정비계획

구분	주요내용	추진계획	
법령 및 제도	동물보호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동물등록방법 일원화('16) ◦동물판매시 가등록 의무화('15) ◦동물인수제 도입('16) ◦반려동물 경매업 별도 규정 및 이력관리('16) ◦동물미용업 등 등록제('16) ◦동물복지 운송('16)·도축('17) 규정 ◦동물복지축산물 인증제로 개편 및 유사표시 제한('16) ◦동물복지 인증 축종 확대(계속) ◦동물실험지침 교육 의무화 및 우수기관 지정제 도입('18) ◦윤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권한·교육 강화('16) ◦불필요한 동물실험 금지('17) ◦동물보호기금 설치('17) ◦동물복지위원회 확대·보완('15) ◦명예감시원 보수교육 의무화('16) ◦동물보호의 날 및 주간 지정('16) ◦동물유기, 미등록 영업 등 처벌 강화('16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제도 도입 일정 등을 고려하여 법령 개정
	수의사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동물병원 진료시 동물등록 여부 확인 및 등록번호 진료 기록부 기재 의무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동물병원 관리·감독 체계를 고려하여 수의사법 개정 추진
	개발제한구역 특별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개발제한구역내 직영 동물 보호센터 신·증축 제한 완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관계부처(국토부) 협의 후 입법 추진

	건축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동물보호센터 규모별 건축물 용도 세분화 ◦직영 동물보호센터내 동물병원 개설시 건축물 용도 적용 완화 ◦동물장묘업의 건축물 용도 명확화 	◦관계부처(국토부) 협의 후 입법 추진
	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(가칭) 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인력·시설기준, 구조·포획·보호·관리·반환·입양·인도적 처리 등 세부사항 규정 ◦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침 포함 	◦훈령으로 제정
	폐기물관리법	◦동물장묘업을 통해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	◦관계부처(환경부) 협의 후 입법 추진
	축산법	◦축산업 허가제 관련 교육·점검 강화('16)	◦허가제 도입시기 등 고려하여 법령 개정
	축산물위생관리법	◦도축검사관 임무 추가	◦관계부처(식약처) 협의 후 입법 추진
	화장품법	◦화장품 동물실험 제한	◦관계부처(식약처) 협의 후 입법 추진
	사법경찰직무법	◦특사경제도 도입	◦관계부처(법무부) 협의 후 입법 추진
통계	반려동물 및 관련 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반려동물(개고양이) 사육 현황 * '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포함 ◦반려동물 관련 산업 통계 세분화 	◦관계부처(통계청) 협의 후 추진
	유기·유실동물 보호·관리 실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동물보호센터 질병감염 실태 ◦사설보호소 현황 	◦조사방법 설계 및 조사 실시('15)
	동물복지형 축사시설 실태	◦동물복지형 시설 도입 현황 및 투자·운영비	◦연구용역('14)

□ 총 소요액('15~'19) : 1,720억원(신규사업 1,348, 계속사업 372)

* 보조 728(신규 673, 계속 55), 융자 992(신규 675, 계속 317)

구	분	주체	형태	'14	투융자계획(백만원)					비고	
					'15	'16	'17	'18	'19		계
총 계				15,685	21,278	32,738	42,893	32,785	42,345	172,039	
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	○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비	농식품부	보조	300	300	300	600	600	600	2,400	계속
	○직영 동물보호센터 인건비	농식품부	보조	-	-	450	450	450	450	1,800	신규
	○동물보호센터 백신, 진단키트	지 자 체	보조	-	-	1,890	1,890	1,575	1,575	6,930	신규
	○시설보호소 증성화	농식품부	보조	-	-	500	-	-	-	500	신규
			합계			3,000	3,000	3,000	3,000	12,000	
	○동물생산업 시설	지 자 체	보조	-	-	1,000	1,000	1,000	1,000	4,000	신규
			융자	-	-	2,000	2,000	2,000	2,000	8,000	
	○동물용의약품 생산시설 현대화	농식품부	융자	15,300	10,578	10,578	10,578	-	-	31,734	계속
	○길고양이 증성화	농식품부	보조	-	-	1,000	2,000	3,000	4,000	10,000	신규
소 계				15,600	10,878	17,718	18,518	8,625	9,625	65,364	
한국형 농장동물 복지체계 구축			합계	-	9,000	9,000	12,000	12,000	15,000	57,000	
	○동물복지형 축사시설	지 자 체	보조	-	3,000	3,000	4,000	4,000	5,000	19,000	신규
			융자	-	6,000	6,000	8,000	8,000	10,000	38,000	
			합계	-	390	780	2,340	3,120	4,680	11,310	
	○동물복지형 운송차량	지 자 체	보조	-	130	260	780	1,040	1,560	3,770	신규
			융자	-	260	520	1,560	2,080	3,120	7,540	
			합계	-	-	3,000	6,000	6,000	6,000	21,000	
	○동물복지형 도축장 시설	지 자 체	보조	-	-	1,000	2,000	2,000	2,000	7,000	신규
			융자	-	-	2,000	4,000	4,000	4,000	14,000	
○동물복지 축산 직불제	농 관 원	보조	45(연구)	-	1,000	3,000	3,000	7,000	14,000	신규	
소 계				45	9,390	13,780	23,340	24,120	32,680	103,310	
동물실험 윤리성 제고	○윤리위원회 교육	농식품부	보조	10	10	20	20	20	20	90	계속
	○동물실험 대체교재 개발	농식품부	보조	-	-	200	-	-	-	200	신규
	소 계				10	10	220	20	20	20	290
추진체계 및 R&D	○동물복지위원회 운영비	농식품부	보조	-	-	20	20	20	20	80	신규
	○R&D 과제 추진	농식품부	보조	80	1,000	1,000	1,000			3,000	계속
	소 계				80	1,000	1,020	1,020	20	20	3,080

□ 재원조달 : 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시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반영

가 계획의 추진 체계

- **과제 담당기관**(농식품부, 검역본부, 농진청 등)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의거하여 **자체 세부계획 수립 시행**
 - 주요 과제 시행을 위한 단계별 세부계획 수립 시행 및 정책 지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소요예산 확보 철저
- **지방자치단체**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**5년마다 자체계획 수립·시행**
 - 시·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농식품부에 통보(동물보호법 제4조)

나 계획의 평가 체계

-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대한 **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, 추진실적을 점검·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**
 - 농식품부에서 매년 담당기관별 시행계획을 총괄 조정하고, 추진실적 점검·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시행계획 수립
- 시·도에서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및 자체계획에 따라 **매년 시·도, 시·군·구 추진실적 점검·평가**
 - 지자체별 실적 공표 및 포상, 우수사례 공유 등 추진